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정기부금단체 심사 및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인구정책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미래에 대한 체계적 예측 및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달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각종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공공정책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관리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및 대외경제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 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개발금융

국의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지원 기능을 국제금융국으로 이관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제실 및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조세정책과·조세분석과·조세특례제도과”을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2.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3.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11.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12.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제18조의2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

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총계 “1,035”를 “1,04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028”을 “1,042”로 하며, 일반직 계 “1,018”을 “1,03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9”를 “21”로 하며, 행정사무관 “382”를 “38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7”을 “65”로 하며,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2”를 “75”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1,036”을 “1,05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029”를 “1,04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019”를 “1,03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9”를 “21”로 하며, 행정사무관 “400”을 “401”로 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8”을 “66”으로 하며,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2”를 “7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0년 9월 30일까지
2)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1년 2월 28일까지
3)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0년 9월 30일까지
4)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0년 9월 30일까지
5)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0년 9월 30일까지
6)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1년 2월 28일까지
7)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	6명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5]

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5조 관련)

1. 제2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

총 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2

2. 제2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3. 제2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제실) ① (생 략)	제11조(세제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제실에 <u>조세정책과 · 조세분석과 · 조세특례제도과</u>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u>조세정책과 ·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분석과</u> ----- ----- ----- -----.
③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u>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u> <u>기획 · 입안 및 총괄 · 조정</u>
<신 설>	3. <u>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u> <u>굴</u>
2. ~ 12. (생 략)	4. ~ 14. (현행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④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u> <u>기획 · 입안 및 총괄 · 조정</u>	<삭 제>
6. <u>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u> <u>굴</u>	<삭 제>
7. · 8. (생 략)	5. · 6.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9. (생략) ⑤ (생략) ⑥ ~ ⑮ (생략) 제17조(국제금융국) ①·② (생략) ③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9의2. ~ 9의4. 삭제 10. ~ 13. (생략) ④ ~ ⑧ (생략)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② (생략)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u>	7.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 ⑮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금융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u> 11. <u>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u> 12. <u>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u> 13. ~ 16.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	---

5. <u>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u>	<u><삭 제></u>
6. <u>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u>	<u><삭 제></u>
7. ~ 10. (생 략)	4. ~ 7. (현행 제7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11. (생 략)	8.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 략)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다.	③ ----- ----- ----- --,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1명(5급 1명)----- ---.
제25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2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u>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 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u>	<u><삭 제></u>

<u>재정부에 둔다.</u> <u>③</u> (생략) <u>④</u> (생략)	<u>②</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③</u> (현행 제4항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35</u>	<u>1,049</u>	+14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028</u>	<u>1,042</u>	+14
·	·	·	
·	·	·	
일반직 계	<u>1,018</u>	<u>1,032</u>	+1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9</u>	<u>21</u>	+2
행정사무관	<u>382</u>	<u>383</u>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57</u>	<u>65</u>	+8

·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 ·	· <u>72</u> · ·	· <u>75</u> · ·	+3
--	---	---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36</u>	<u>1,050</u>	+14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029</u>	<u>1,043</u>	+14
·	·	·	
·	·	·	
일반직 계	<u>1,019</u>	<u>1,033</u>	+1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9</u>	<u>21</u>	+2
행정사무관	<u>400</u>	<u>401</u>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58</u>	<u>66</u>	+8
·	·	·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	<u>72</u>	<u>75</u>	+3
·	·	·	
·	·	·	